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129

제출년월일 : 1999. .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직업교육확충비 61,575,610원, 수해복구지원비 31,953,000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88,152,000원, 사망조의금 446,485,000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51,833,000원, 손해배상금 26,635,000원으로 총806,633,610원을 지출하였음

예비비지출 내역

(단위 : 원)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1. 직업교육확충	'98. 7. 9.	120,000,000	61,575,610	58,424,390
2. 수해복구 지원비	'98. 8. 24	32,000,000	31,953,000	47,000
3.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98. 8. 26.	188,152,000	188,152,000	0
4. 사망조의금	'98. 10. 7.	446,485,000	446,485,000	0
5.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98. 10. 7	51,833,000	51,833,000	0
6. 손해배상금	'98. 10. 13	26,635,000	26,635,000	0
합 계		865,105,000	806,633,610	58,471,390

예비비사용 명세서 : 불임

참고사항 : 덧붙임

-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공문서 사본

예비비사용 명세서

1. 직업교육확충

(단위:천원)

장	관	항	과 목			예비비지 출결정액	예비비사 용액	잔 액	비고
			세항	세세항	목				
본청	학교비	학교운영비	고등학교	학교운영비	학교교육비	100,000	51,795	48,205	
		사학지 원비	사학운영 지원비	고등학교	경상교육사 업비	민간경 상이전	20,000	9,781	10,219
합 계						120,000	61,576	58,424	

예비비지출 사유

IMF 관리체제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공동실습소 및 실업제고교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재취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함(실업제 8개고교 에서 실시)

2. 수해복구 지원비

(단위:천원)

장	관	항	과 목			예비비지 출결정액	예비비사 용액	잔 액	비고
			세항	세세항	목				
보은 교육 청	시설비	학교시설 비	초등학교	투자교육사 업비	시설비	20,000	19,953	47	
			중학교	투자교육사 업비	시설비	12,000	12,000	0	
합 계						32,000	31,953	47	

예비비지출 사유

'98. 8. 12.~13.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보은지역 수해복구비
 종곡초등학교 담장복구비(31.5m) 7,000천원
 수한초등학교 담장복구비(24m), 운동장토사제거 13,000천원
 원남중학교 담장복구비(55m) 12,000천원

3.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단위:천원)

장	관	항	과 목			예비비지 출결정액	예비비사 용액	잔 액	비고
			세항	세세항	목				
본청	교육행	교육행정기	중등교육		민간경	188,152	188,152	0	
	정비	관운영비	국운영	기관운영비	상이전				
합 계						188,152	188,152	0	

 예비비지출 사유

'98년 8월말 사립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 예산액 : 9명 378,000천원
- 명예퇴직자 : 14명 566,152천원
- 부족액 : 188,152천원

4. 사망조의금

(단위:천원)

장	관	항	과 목			예비비지 출결정액	예비비사 용액	잔 액	비고
			세항	세세항	목				
본청	교육행	교육행정기	관리국운		민간경	446,485	446,485	0	
	정비	관운영비	영	기관운영비	상이전				
합 계						446,485	446,485	0	

 예비비지출 사유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34조, 제41조, 제41조의2,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공무원 사망조의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부족액 지급을 위함

- 예산액 : 500,000천원
-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 458명 946,485천원
- 부족액 : 446,485천원

5.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단위:천원)

과 목						예비비지	예비비사	잔 액	비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출결정액	용액		
본청	교육행	교육행정기	관리국운	기관운영비	민간경	51,833	51,833	0	
	정비	관운영비	영						
합 계						51,833	51,833	0	

□ 예비비지출 사유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34조, 제41조, 제41조의2,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공무원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의 부족액 지급을 위함

- 예산액 : 250,000천원
-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38명 : 301,833천원
- 부족액 : 51,833천원

6. 손해배상금

(단위:천원)

과 목						예비비지	예비비사	잔 액	비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출결정액	용액		
본청	교육행	교육행정기	행정관리담	기관운영비	배상금	26,635	26,635	0	
	정비	관운영비	당관실운영						
합 계						26,635	26,635	0	

□ 예비비지출 사유

'93.10.21. 18:00경 발생한 제천중학교 화재사건으로 인한 매점 소훼 손해배상 합의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임

- 제1심 판결액 : 12,748,915원
- 제2심 판결액 : 14,975,540원
- 소송비용 : 1,086,588원 (원고부담액 2,795,042원 - 피고부담금1,708,454원)
- 제1심 판결액 + 제2심 판결액 - 소송비용 = 26,637,86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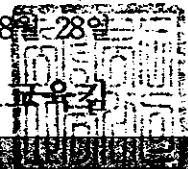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1999-86 호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에 부의 할 안건을
다음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8월 28일

충청북도교육청



부의안건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개정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 (안 제2조 제2항 별표) ○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학원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교습소의 부제교습 횟수를 폐지함 (안 제5조) ○ 유해업소와 학원과의 수평거리가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한 학원의 설립제한 규정을 폐지함 (안 제6조) ○ 강사 등의 채용 및 해임보고를 통보로 완화 하고 해임 통보기한을 5일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완화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학원 수강료의 1년이내 변경을 금지한 규정은 폐지함 (안 제8조 제2항) ○ 우수학원 지정·육성 조항 신설 (안 제10조) ○ 학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진흥 조항 신설 (안 제11조)

부 의 의 건	부 의 의 건
<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안</p>	<p>○ 수수료라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안 제2조 제1항)</p> <p>○ 수수료의 징수는 “증명 및 공개정보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 시험·고시 및 배정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로부터 [별표1], [별표2]의 수수료 징수금액에 의하여 징수하고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안 제4조 제1항)</p> <p>○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발급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안 제5조)</p>
<p>○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p>	<p>○ '98년도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중 세입결산액은 802,204,003,6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79,826,074,650원이며,</p> <p>○ 이월사업비65,461,237,320원, 순세계잉여금 56,905,543,670원, 국고보조금잔액 11,148,000원으로서 총 122,377,928,99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함.</p>
<p>○ 199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p>	<p>○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88,152,000원, 사망조의금 446,485,000원, 직업교육확충비 61,575,610원,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51,833,000원, 수해복구지원비 31,953,000원, 손해배상금 26,635,000원으로 총806,633,610원을 지출하였음.</p>



“ 잠깐!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우편 361-703/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전화 (0431) 272-0414/ 전송 (0431)271-8696
의사과장 : 안용균 / 의안담당 : 연승흠 / 기안자 : 이찬동

문서번호 의사 81433-263
시행일자 1999.08.28. (영구)
경유
발음 충청북도교육감
참조 기획관리과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1999. 8. 28	결재 · 공람	
	번호	41282		
처리과	기획관리과			
담당자				

제목 의안이송

1. 기관 81433-710('99.8.12)호의 관련입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송합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104 - 1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4 -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요징수조례안	원안가결
104 - 3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원안가결
104 - 4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원안가결
104 - 5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5회변경계획안	원안가결

덧붙임 : 의안 각 2부. 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